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128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전액 분리과세(박수영의원안) ...	2

I. 개요

1.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512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10. 31.
- (3) 회 부 일 : 2024. 10.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징수 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함. 이에 공제 장기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소득결집 효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액이 급증하는 실정임.

반면 유사 제도인 사적연금도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결하고 있어 과세 방법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바목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전액 분리과세(박수영의원안)

현 행 ¹⁾	개 정 안
☐ 분리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 분리과세 대상: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25년 2월 세법개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중 퇴직소득 과세 대상: 1)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²⁾ 2)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시행일 2025.7.1.) ☐ 분리과세 한도: <u>연간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300만원</u>	☐ 분리과세 한도 폐지 ☐ 분리과세 대상: (현행과 같음) ☐ 분리과세 한도: <u>폐지</u>

* 박수영의원안 2024. 10. 31. 제출(의안번호 5128)

☐ 개정안은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가 폐업, 해산,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파산선고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받는 해지일시금의 분리과세(15% 세율) 한도를 현행 300만원(연간 기타소득금액 합산)에서 해지일시금 전

1) 개정안의 발의 당시 현행 규정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 발생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이었으나,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제사유 발생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라 하더라도, 1)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종전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가입자(시행령 규정 사항) 요건 완화

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소기업·소상공인 범위³⁾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음.

2007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이후 2024년 9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291만명이고, 누적 공제부금은 37조 6,990억원이며, 8조 1,224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및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9월)	누 계 (‘07년 이후)
가입자수	237,167	274,094	288,570	266,990	242,875	195,611	2,909,561
공제부금	33,258	37,857	44,150	50,398	53,623	42,885	376,990
공제지급건수	77,411	84,459	99,388	97,850	119,626	95,253	810,139
공제지급액	6,572	7,900	9,981	11,534	15,517	13,658	81,22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해지일시금 또는 해약환급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 해지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가입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계약의 해지는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

3) 소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5명~10명 미만

주해약⁴⁾과 가입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에 따르면⁵⁾ 아래 표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약과세표준)”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⁶⁾에 따르

4)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등 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데, 간주해약은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되고 통상 일반해약에 따른 환급금보다 큰 금액의 환급금을 지급함.

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 해지사유

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6)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

면 해약과세표준이 다른 연간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됨.

[공제금 지급 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연번	공제금 지급사유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때
4	60세 이상이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때
5	자연재난 등으로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영업이 불가능한 때
6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때
7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은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때
8	파산선고를 받은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때

□ 개정안은 공제사유 외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수령하는 해지일시금의 분리과세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공제계약을 해지한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해약과세표준은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

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하여 납입한 금액을 공제한 누적금액으로 계산하므로 공제가입자가 장기간 많은 공제부금을 납입할수록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함.

또한,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 이후 과세가 종결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일시에 큰 소득금액이 발생할 경우 초과누진세율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상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게 되는 이른바 소득의 결집효과가 발생함.

최근 계속된 경기 악화 및 높은 물가수준으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약 건수가 2022년 44,295건에서 2023년 71,46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해지일시금을 전액 분리과세함으로써 소득 결집효과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연금계좌 등 유사 제도와 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와 사적연금의 개인의 노후 보장 및 장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제도의 취지와 구조가 유사함.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가 공제계약을 임의로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유사 제도인 사적연금의 경우 중도해지, 일부인출, 수령한도 초과 수령 등 연금외수령 시 환급금 전액을 분리과세기타소득(세율 15%)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⁷⁾.

7)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다만, 소상공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을 마련하려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취지와 일시적인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제 탈퇴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환급금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공제금의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소상공인이 공제제도 가입을 유지할 유인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당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가입이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만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정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으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구조였으나, 2024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지급사유가 추가되어 2024년 6월 1일부터 공제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불능, 질병·부상으로 인한 요양, 경영난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와 같이 공제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다시 사업을 영위하며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공제금 지급사유에 새롭게 추가함과 동시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 라. (생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에, 추가된 공제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공제가입 유지를 허용하는 ‘공제금 중간정산 제도’를 함께 도입하였음⁸⁾).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장려금 지급과 같이 공제가입자가 공제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노후를 대비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의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것이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공제 탈퇴유인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

□ 또한,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전액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규정하기 위해 안 제14조제3항제8호바목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⁹⁾에서 “제21조제1항제18호”를

8)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29조(공제사유) ①중앙회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단, 제5호 내지 제8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요청 시 공제금의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를 허용한다.

1. ~ 4. (생략)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9) 「소득세법」 및 본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

제외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바.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신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